



서울신용보증재단

수신자 내부결재
(경유)

제목 신용보증규정 개정을 위한 이사회 상정(안)

「신용보증규정」 개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'15년 제8차 임시이사회에 의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.

- 다 음 -

1. 개정근거

-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「재단 보증 및 관리표준화 규정 개정 시행」
(보증 2015-31728, 2015.11.18.)

2. 주요 개정내용

- 대표자 및 실제경영자 용어의 정의 명확화
 -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의한 지문정보 파기 지침 반영
- ※ 세부내용 <붙임>문서 참조

붙임 : 1. 신용보증규정 개정(안) 1부.
2. 신용보증규정 개정前 전문 1부.
3. 신용보증규정 개정後 전문 1부. 끝.

과장	팀장	부장	이사	이사장
협조자	전략기획실장			

감사실장 보증지원부 감사번호 317

시행 보증지원부-647 (2015.12.21.) 접수 ()
우 04130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68 서울신용보증재단 17층 /<http://www.seoulshinbo.co.kr>
전화 / 02-2174-5212 /전송 02-3278-8117 / pym1222@seoulshinbo.co.kr / 공개